



대법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0 6 5 9 0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에이동 103호(읍내리, 한국통신사원아파트)
 임그루

경3 744 02 03
포항 울진

원고(상고인)

 3 6 3 2 2
 ↓
 2097077-798763
 (민사과 민사1부)
 2024-005-220100-053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4다220100 손해배상(국)

예정 기일 :

담당재판부 : 민사1부

법원사무관 한선미

직통 전화 : 02-3480-1339

팩 스 :

e-mail :

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진행과 관련된 정보(송달과 확정내역 포함)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나의사건검색' 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사 건 : 대법원 2024다220100호 손해배상(국)

상 고 인(원고) : 임 그 루

주 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13 한국통신아파트 A동103호

피상고인(피고) : 대한민국

위 사건에 관하여 피상고인(피고)1)는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준비합니다.

상고취지에 대한 답변

1. 상고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상고인(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 원고는 1심, 2심 판결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는 다
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이하, 상고인(원고)을 “원고” 라 하며, 피상고인(피고)을 “피고” 라 합니다.



2. 피고의 답변

- 1) 1, 2심 법원에서 판단한 판결은 타당합니다. 관련 사실관계 등 답변은 제 1심, 제2심 법원에 제출한 피고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각 호의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됩니다.
- 2) 설령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의 직무집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직무집행이었음을 이 사건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의 판결문에서 확인됩니다. 이 판결은 사실인정 및 그에 따른 판단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3) 피고측 경찰공무원은 지금까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였으며, 또한 적법하게 업무수행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며,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 피고는 원고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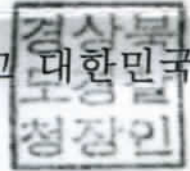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준비서면 - 각 1부

2024. 3. 18.

피고 대한민국



피고 소송수행자 박민제, 주경하, 천성욱, 김민석

대법원 귀중



접수증명 신청서

사 건 2024다220100 (손해배상(국))
원고(채권자,신청인) 임그루
피고(채무자,피신청인) 대한민국

위 사건에 대한 준비서면 이(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18

피고 소송수행자
박민제

대법원 귀중

상 고 이 유 보 충 서

사 건 2024다220100 금 전(손해배상) 민사 1부 (02-3480-1339)

원 고 성명: 임그루
주소:(우3632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13 한국통신아파트 A동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주소:(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다 음

피고 준비서면을 보고 보충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나312659판결문에 있는
내용 해명

대구지방법원 2023나312659판결문 주요내용

『1) 경찰이 2022. 4. 21.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4. 21. 울진경찰서 장유정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을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직원들이 집조식으로 분산되어 있고, 보이스피 싱 직원들은 자신들의
신원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이 아닌 사람을 기망하여 수지책으로 이용하고 있어
직원 검기가 쉽지 않은 점, ② 이러한 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개통한 핸드폰의 수거현장에서 경 찰관이 잠복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거자는 단순 퀵서비스 종
사자일 가능성이 커 보이스피싱 직원을 검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경찰은 2022. 4.
25. 원 고가 진정한 내용에 기반하여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사건에 대 한 수
사를 진행한 점, ④ 경찰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수사,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CCTV 설치 확인 수사 등을 하였으나 해당 전화는 대포폰이고, CCTV는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수사중지 결정
에 이르게 된 점, ⑤ 위와 같이 수사중 지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으
로 인한 것이지 2022. 4. 21.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2022. 4. 21. 곧바로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 인정될 뿐이다"를 "인정될 뿐이고, 이 법원의 울진 군수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한국통신사원아파트 A동 103호 부근을 화 인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친다.

1. 갑 제4호증과 준비서면을 보면 4월 21일 범죄 신고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론 때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비교하며 다 들어보고도 “피해당한 것을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 판결문 “그러나 앞서 든 증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② ③ ④ ⑤” 등의 내용은 경찰이 주장한 사실이 없
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것은 재판한 것이 아니고 피고를 변호했다고 생

각합니다.

3. 저는 울진 군수 사실조회를 보고 집 주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걸 인정 하시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론 때 인정하지 않아 항의하니 1월10일까지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현장 확인 요청도 하고 다시 사실 조회 신청을 했는데 하지 않습니까?

○. 갑 10호증 왼쪽 위쪽을 보면 “새마실옥숙교3” “후포버스터미널앞2”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제센타는 평상시 카메라가 향하여 있는 곳 지명 이름을 기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옥숙교” 정확한 명칭이 “새마실옥숙교3”입니다. 이렇게까지 세밀하지는 않아도 그런 명칭으로 카메라가 향해있습니다.

맺음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람들이 알고있는 상식을 모욕했습니다. 서민의 억울한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러니 “경찰이 잘못을 했으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직무집행이었음을 이 사건 제1심 법원과 제 2심 법원의 판결문에서 확인됩니다.” 또 신고도 받지 않았고 CCTV 조사도 안 했으면서 “적법하게 업무수행을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며 한 판결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권리 주장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및 장관님에게도 그리고 게시판에도 올릴 것입니다. 법원이 반성한다는 걸 판결로서 보여주십시오.

첨부

1. 얼마전 박성재장관님에게 보낸편지

2024. 3. .

상고인(원고) 임 그루

대법원귀중



1 / 1

방범(북부) 녹화 영상

A0893 새마실-옥동길 3 (Ch 03)

15:58:46.722

8길 120 + 1

15:58:46.722 A0893 새마실-옥동길 3 (Ch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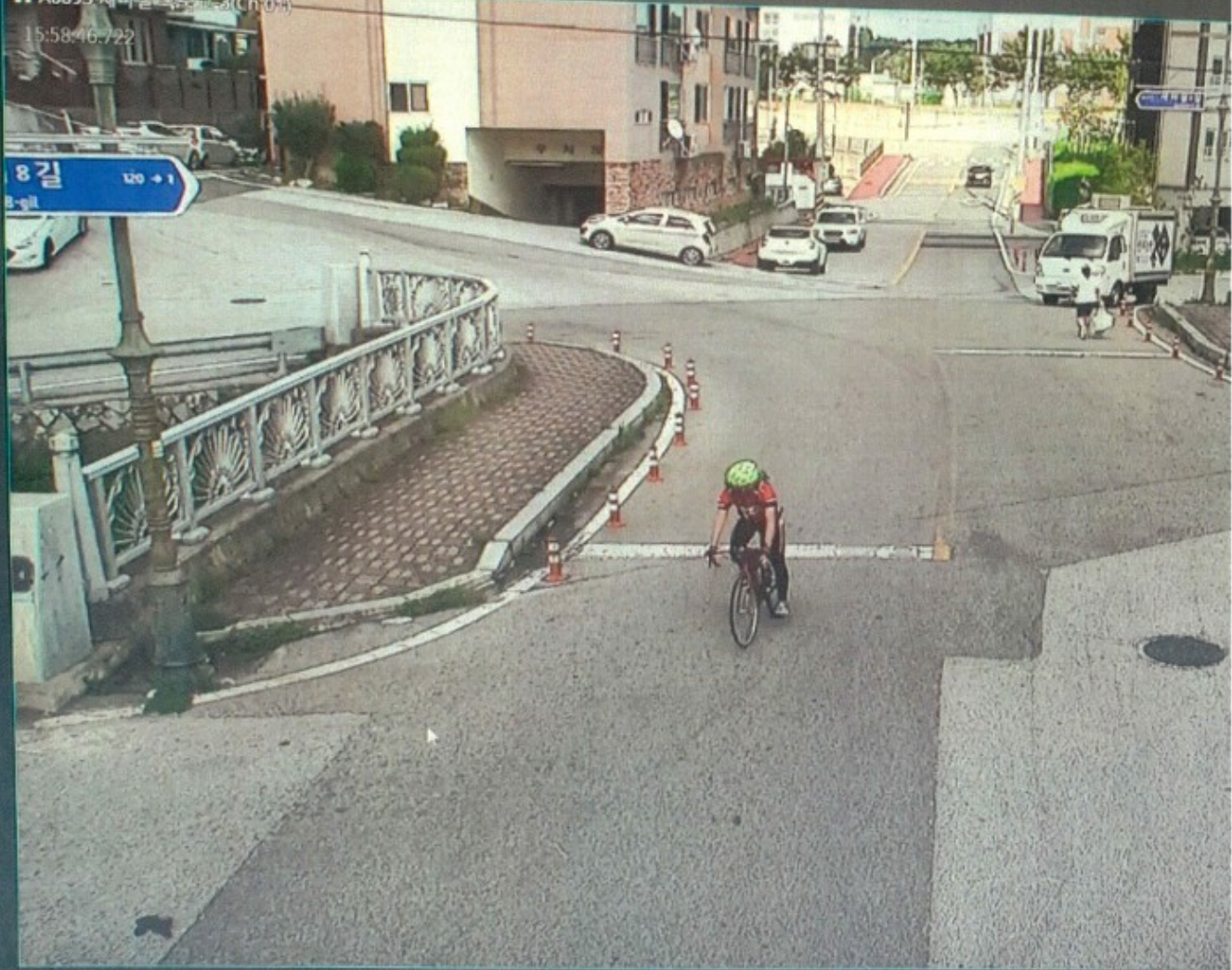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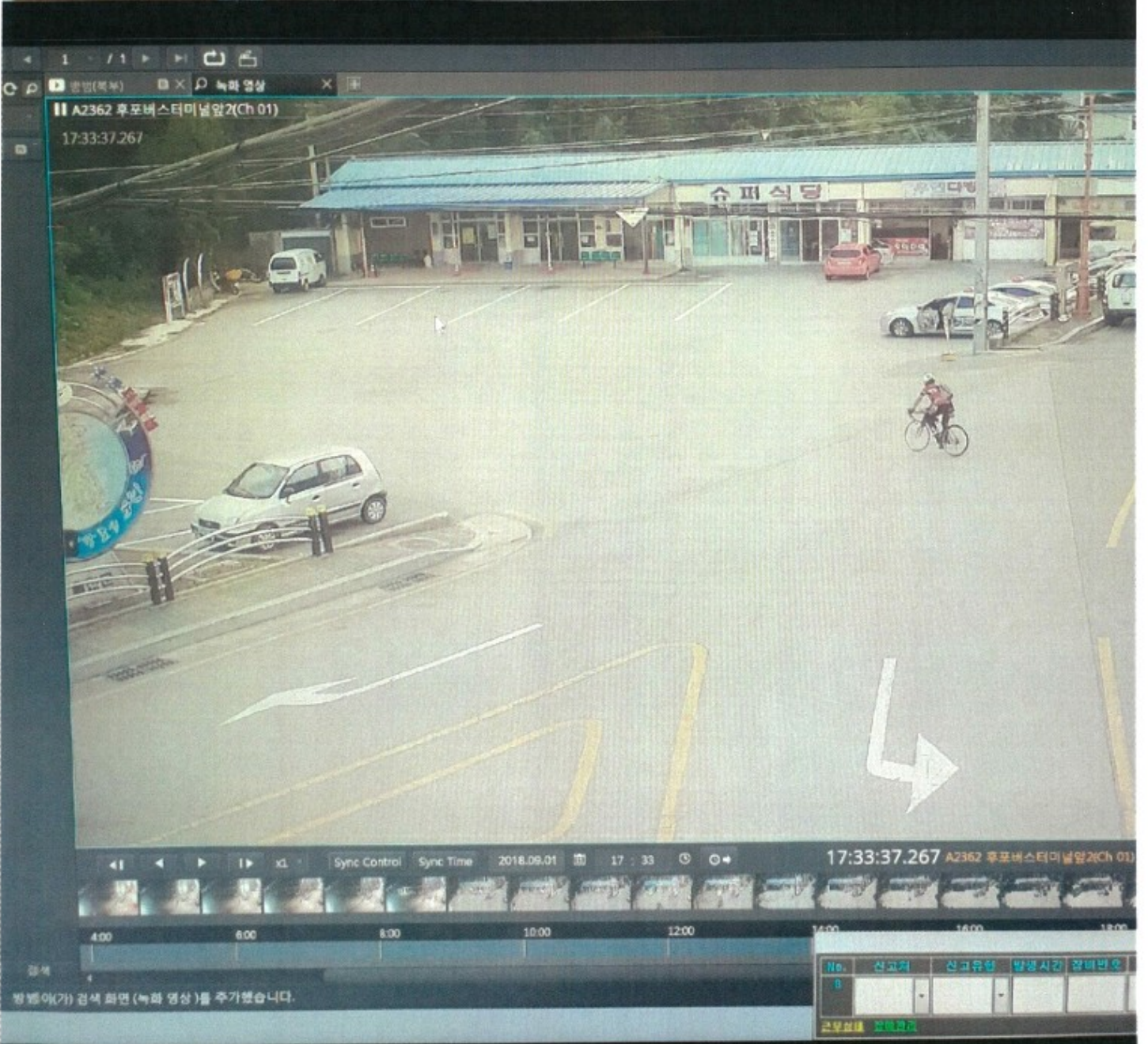
검색

방범이(가) 검색 화면 (녹화 영상)을 추가했습니다.

No.	신고처	신고유형	방범
0			

근무상황 방범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울진에 살고 있는 일그루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위해 정콜이 살고 있는데 정콜이 범죄 신고를 받고
살아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 감을 가해성이 많은 기회도 놓쳐 버리고 또, 사치는 스타트업
회사는 하루의 회산이며 수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식으로 권리를 복구하고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 소식으로 법원에서 공부를 이루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헌법과 법률 상식은 무시하고 법관의 충실 즉 판사 마음대로
판결합니다.

장관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공기에 대한
기존의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시라고 제사의 주사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를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양심을
때서 헌법을 개정 할 수 있습니다.

또, 위헌지침 "판사는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라고 법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경찰 관련 헌법 소원 결정 금인 2건의 사건에 있습니다.

첨두 1. 울진군 자유게시판 비영 (첨두 파월이 소위용 2대도 울진군청)

· 대명원 4건 번호 2024다 220/00 피고: 법무부장관 박성래
· 서울고등법원 4건 번호 2023누 62009 피고: 서울시 경찰청장

이 되도

○ KT 4건 취외 서울고등법원 2023래누 17 2023년 3월 15일 접수
왔는데 통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첨부 2: ① 서울고등법원 2021래누 181 취외서면

② 2021래누 181 판결문 ③ 대명원 2022다 6840 판결문

○ KT 등 5건 취외 서울고등법원 2023래누 248 2023년 12월 7
일 접수왔는데 통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첨부 3: ① 서울고등법원 2023래누 40 취외서면

② 2023래누 40 판결문 ③ 대명원 2023다 149 판결문

○ 8양미 4건 취외 대명원 2023다 319014 판결문입니다. (이 4건은
서울이 촉제제도 영원의 판결문들은 이리외 받아야 하는데 취외 받
아 있습니다.)

첨부 4: ① 2023다 319014 송고이후서

② 대구지방법원 2022래누 25 판결문 ③ 대명원 2022다 92538 판결문

* 전무가 현명 법률을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외서면 보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 할 바름

첨부 5: ① 본래이징우 때 변칙하여 영권행정처의 송변

② 본속별 이통계급에 보낸 편지

박성래 장관님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박성래 장관님 취외 일
끝되어 이현백이 판결되기를 결심으로 바랍시다.

2024년 3월 16일

윤 그 주 올림